

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. 3. 18 선고 2019가단148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20. 3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 - 가. [별지 1] 목록 기재 부동산 중,
 - 1) [별지 2] 도면 표시 3, 4, 5, 6, 7, 8, 9,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ㄱ) 부분 지상 시멘트 블록조 함석지붕 단층 무허가 창고 24.3㎡를,
 - 2) [별지 2] 도면 표시 1, 2, 3, 9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ㄴ) 부분 지상 시멘트 블록조 함석지붕 단층 무허가 창고 5.9㎡를,
 - 3) [별지 2] 도면 표시 10, 11, 12, 13,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ㄷ)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무허가 창고 40.8㎡를 각 철거하고,
 - 나. [별지 1]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[별지 3]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홍승모

별지